

## 한·일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Study Arbitral Award under the Arbitral Laws between Korea and Japan

최 석 범\*\* Seok-Beom Choi

정 재 우\*\*\* Jae-Woo Jung

김 태 환\*\*\*\* Tae-Hwan Kim

#### 〈목 차〉

- I. 서론
- II. 선행연구분석
- III. 중재판정부의 구성
- IV. 중재판정의 주요내용
- V. 결론-양국 중재법의 통일화방안

주제어 : 중재, 중재법, 중재판정, 중재판정부, 비교법, 한국, 일본

\* 이 논문은 2005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중앙대학교 BK21계약교수

\*\*\*\* 중앙대학교 BK21대학원생(박사과정)

## I. 서 론

국제상거래는 국내상거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상사분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사자들간의 지속적인 거래관계유지나 비용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상사분쟁은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원의 법관이 내리는 판단을 판결이라고 하고 법관이 아닌 사인이 내리는 판단을 판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재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부탁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하는데 Domke도 “중재판정이란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중재인의 최종적인 결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sup> 중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재판정이란 중재판정부에 부탁된 분쟁의 실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일체의 판정을 말하며 잠정적 중재판정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중재판정은 중재에 부탁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반드시 특정되어야만 중재판정으로서 유효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중재법은 중재의 적법한 조건을 정비하여 중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공정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북아지역이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대두되면서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고, 동북아 경제를 북미, 유럽과 더불어 세계 3대 경제중심의 하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ree

1) Martin Domke, *Domke on Commercial Arbitration: The Law and Practice of Commercial Arbitration*, Callaghan & Company, 1984, p.419.

Trade Agreement:FTA)체결이 필수적이다. 동북아지역이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탄생되는 동북아FTA가 체결될 경우에 현재의 역내무역보다 더욱 더 많은 역내무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북아국가들의 분쟁해결을 원활하게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북아국가 내에서의 중재법의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분쟁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선,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양국의 중재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양국 중재법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러한 연구가 동북아국가들의 중재법을 통일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의 대상을 사법상의 분쟁으로 하고 있고 일본의 중재법에서는 이미 발생한 민사상의 분쟁 또는 장래에 있어 발생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민사상의 분쟁을 중재합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규정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중재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양국의 중재법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논의의 초점을 중재판정의 구성과 중재판정에 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우선 지면상 양국의 중재법을 조문별로 비교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중재법에서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판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상 중재판정부구성과 중재판정의 차원에서 비교법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에서 중재법을 통일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 II. 선행연구분석

### 1. 동북아 개별국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지역에 속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동북아 개별국가의 중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군재외<sup>1</sup>인의 “중국의 ADR제도와 국제중재판정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연구”<sup>2</sup>)는 중국의 ADR분쟁해결기구, 중국의 분쟁해결방법, 중국의 중재판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최석범의 “중국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sup>3</sup>)은 중국의 법률체계 및 국제상사분쟁의 현황, 중국의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법,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분쟁처리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중재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이주원의 “CIETAC 중재의 중재절차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sup>4</sup>)는 한중중재절차의 비교, 사례분석 및 시사점을 논하고 있다.

일본의 중재법과 관련된 논문으로는 木棚照一의 “일본에서의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sup>5</sup>)연구에서는 중국의 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일본의 판례, 일본의 신중재법의 제정, 외국중재판단의 승인·집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渡辺惺之의 “일본에서의 중재법의 현상과 과제”<sup>6</sup>)연구에서는 일본 신중재법의 제정배경, 신중재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중재와 관련한 최근판례, 장래의 일본에서의 중재가

2) 신군재·김경배, “중국의 ADR제도와 국제중재판정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3, pp.219-235.

3) 최석범, “중국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12, pp.135-172.

4) 이주원, “CIETAC 중재의 중재절차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6, pp.185-201.

5) 木棚照一, “日本における外國仲裁判斷の承認と執行”,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 pp.1-12.

6) 渡辺惺之, “日本における仲裁法の現状と課題”,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3, pp.37-65.

능성을 논하고 있다.

이상의 논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학자로서 일본의 중재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주로 중국의 중재제도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 2. 한국의 중재법과 관련된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중재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우성구의 “우리나라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적용상의 쟁점”<sup>7)</sup>이 있는데 쟁점을 중재합의준부와 청구권포기, 중재인의 선정과 기피, 중재의 개시 및 비용과 출소기한, 중재심리와 증거조사, 중재판정과 구제 등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홍성규의<sup>1인</sup>의 “개정한국중재법의 주요논점과 과제”<sup>8)</sup>는 개정한국중재법의 주요내용에 관한 비교검토, 개정한국중재법의 향후과제를 다루고 있다.

길경준의 “한국의 중재제도 현황”<sup>9)</sup>연구에서는 한국중재제도와 중재기관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호원의 “한국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sup>10)</sup>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양병희의 “한국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sup>11)</sup>연구는 한국에서의 중재제도, 조정제도, 화해제도를 다루고 있고 조대연의 “한국중재법의 현황과 과제”<sup>12)</sup>연구는 한국중

7) 우성구, “우리나라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적용상의 쟁점” 「국제상학」, 제14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11, pp.109-127.

8) 홍성규·김종락, “개정한국중재법의 주요논점과 과제”, 「국제상학」, 제18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6, pp.191-213.

9) 길경준, “한국의 중재제도 현황”,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3, pp.19-36.

10) 이호원, “한국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3, pp.99-116.

11) 양병희, “한국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중재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3, pp.3-13.

12) 조대연, “한국중재법의 현황과 과제”, 「중재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재법과 중재제도, 한국중재법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상의 논문에서 한국의 중재제도에 대한 내용이나 중재현황, 개정 한국중재법 등이 주된 연구대상이었다.

### 3. 중재법의 비교법적 선행연구

동북아국가들간 또는 동북아국가와 다른 지역국가의 중재법에 관한 비교법적 선행연구로서 김대현의 “우리나라 중재법, UNCITRAL표준중재법 및 주요선진국 중재법의 비교”<sup>13)</sup>는 중재계약,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최장호의 “한국과 대만의 중재법 개정에 관한 비교연구”<sup>14)</sup>가 있는데 한국과 대만의 중재법 제정과 개정배경, 문제점, 개정필요성, 개정추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홍창기의 “국제상사중재제도에 있어서 중재판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sup>15)</sup>은 국제상사중재 및 중재판정, 국제상사중재판정에 관한 법률적 제문제를 다루고 있다.

장문철의 “동북아국가들과 캐나다의 상사중재법의 상이점”<sup>16)</sup>은 중재제도에 대한 문화적 태도의 상이점, 양측의 상사중재법의 상이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남북한 상사중재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김상호의 “ADR제도를 통한 남북한 상사분쟁

2003, pp.63-92.

- 13) 김대현, “우리나라 중재법, UNCITRAL표준중재법 및 주요선진국 중재법의 비교”, 『무역상무연구』, 제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4, pp.849-911.
- 14) 최장호, “한국과 대만의 중재법 개정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14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11, pp.109-127.
- 15) 홍창기, “국제상사중재제도에 있어서 중재판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무역학회지』, 제28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3.6, pp.205-238.
- 16) 장문철, “동북아국가들과 캐나다의 상사중재법의 상이점”, 『캐나다연구』, 제2집,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0, pp.117-133.

해결방안”<sup>17)</sup>은 북한개방에 따른 북한의 법률제정과 분쟁해결구조, 분쟁의 해결을 위한 남북한 당국의 노력, 분쟁해결촉진을 위한 남북한협력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최석범 외1인의 “동북아 각국의 중재판정부 구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sup>18)</sup>에서 동북아각국에서의 중재법대상, 중재판정부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있다. 최석범의 “동북아국가들의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비교법적 고찰”<sup>19)</sup>에서는 중재법상의 준거법, 중재판정의 형식과 효력,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차원에서 동북아국가들의 중재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상 중재판정을 다루고 있는 논문은 없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상 중재판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Ⅲ. 중재판정부의 구성

#### 1. 중재인의 구성과 선정

##### (1) 중재인의 구성

한국의 중재법상 중재인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한다. 즉, 중재인수는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없으면 3인중재로 진행된다. 이

17) 김상호, “ADR제도를 통한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방안” 「국제상학」, 제19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12, pp.149-167.

18) 최석범·이용근, “동북아 각국의 중재판정부 구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상학」, 제20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6, pp.279-303.

19) 최석범, “동북아국가들의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비교법적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2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8.30, pp.29-65.

는 국제중재에 있어서 3인의 중재인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고 UNCITRAL 모델법의 규정(제10조)과 일치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sup>20)</sup>

일본의 중재법에서는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에 의하는데 단, 제5항 또는 제6항에 규정한 것에 관해서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수가 2명인 경우에 중재인 수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하고 당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중재인 수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중재인의 수를 정한다.<sup>21)</sup>

## (2) 중재인의 선정

한국의 중재법상 중재인의 선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고<sup>22)</sup>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sup>23)</sup> 중재인 선정절차의 합의가 있더라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는데 첫째, 일방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때 둘째, 양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았을 때 셋째, 중재인의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 기타 제3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는 때이다.<sup>24)</sup> 합의가 없는 경우의 중재인의 선정 및 당사자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sup>25)</sup> 일본의 중재법상 중재인의 선임 절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 것에 의한다.<sup>26)</sup>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에 의해 중재인의 선임 절차가 정해진 경우라도 해당 선임 절차에서 정해진 행위를 하지 않고, 기타 이

20) 최장호, 전제서, pp.120-121.

21) 일본 중재법 제16조

22) 한국 중재법 제12조 ①

23) 한국 중재법 제12조 ②

24) 한국 중재법 제12조 ④

25) 한국 중재법 제12조 ⑤

26) 일본 중재법 제17조



유에 의해 해당 선임 절차에 의한 중재인의 선임을 할 수 없을 때는, 일방 당사자는 법원에 대해 중재인의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sup>27)</sup>

일본의 중재법에서 법원은 중재인의 선임에 있어서 ①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중재인의 요건, ②선임된 자의 공정성 및 독립성, ③중재인의 수를 1명으로 정한 경우나 당사자에 의해 선임된 2명의 중재인이 선임해야 할 중재인을 선임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국적과 다른 국적을 갖는 자를 선임한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배려하여야 한다<sup>28)</sup>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에서 선임절차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 1>과 같다.<sup>29)</sup>

<표 1> 합의가 없는 경우의 중재인의 선정절차

구 분	한국중재법	일본중재법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	당사자의 수가 2명이고, 중재인의 수가 1명인 경우, 중재인 선임절차에 대한 합의가 없고, 당사자 사이에 중재인의 선임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중재인을 선임 당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중재인 선임절차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중재인을 선임
3인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각 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인의 중재인을 선정.	당사자의 수가 2명이고 중재인의 수가 3명인 경우, 선임절차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는, 당사자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27) 일본 중재법 제17조 ⑤

28) 일본 중재법 제17조 ⑥

29) 한국 중재법 제12조 ③

	<p>이 경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그 중재인을 선정</p>	<p>당사자에 의해 선임된 2명의 중재인이 그 나머지의 중재인을 선임한다. 이 경우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임한 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을 선임해야 할 취지의 재촉을 받았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임을 하지 않는 때는 해당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 의해 선임된 2명의 중재인이 그 선임 후 30일 이내에 그 나머지의 중재인을 선임하지 않을 때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중재인을 선임</p>
--	---	--

## 2. 중재인의 기피

### (1) 중재인의 기피사유

한국의 중재법상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하고<sup>30)</sup> 중재인은 상기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기피될 수 있는데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여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정 후에 알게 된 사유에 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sup>31)</sup>

일본의 중재법상 중재인의 기피사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자는 중재인에게 ①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중재인의 요건을 구비

30) 한국 중재법 제13조 ①

31) 한국 중재법 제13조 ②

하지 않을 때, ②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중재인을 기피할 수 있다.<sup>32)</sup>

중재인을 선임하거나 해당 중재인의 선임에 관해, 추천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에 관계된 당사자는 해당 선임 후에 알게 된 사유를 기피 원인으로 한 경우에만 해당 중재인을 기피할 수 있다.<sup>33)</sup> 중재인에게서 취임 의뢰를 받고 그 교섭에 응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의뢰를 한 자에 대해 자기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의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실(이미 개시된 것은 제외)의 전부를 고지해야 한다.<sup>34)</sup>

중재인은 중재절차의 진행 중, 당사자에 대해,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의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실(이미 개시한 것을 제외)의 전부를 지체없이 고지해야 한다.<sup>35)</sup>

이와 같이, 중재인의 기피권이란 중재인 취임수락을 한 중재인을 그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재인이 독립·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중재인 자격의 부적합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중재인의 기피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독립이란 중재인을 주체로 하여 다른 사람의 영향이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고 공정성이란 중재절차의 순조로운 진행과 중재판정에 관한 객관성 유지이다.<sup>36)</sup> 그러므로 독립·공정성이란 중재인은 당사자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공정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중재인의 기피절차

한국의 중재법상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고<sup>37)</sup>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32) 일본 중재법 제18조 ①

33) 일본 중재법 제18조 ②

34) 일본 중재법 제18조 ③

35) 일본 중재법 제18조 ④

36) 澤田壽夫, 「仲裁人の獨立, 民事手續の法學革新(上)」, 有斐閣, 1991, pp.578-580.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 또는 제13조 제2항의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부는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sup>37)</sup>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해당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고<sup>38)</sup>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sup>40)</sup>

일본중재법상 중재인의 기피절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는데<sup>41)</sup> 중재인의 기피절차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의 기피에 관한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재판정부가 행한다.<sup>42)</sup> 상기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것을 알았던 날 또는 제18조 제1항 각호에 언급한 사유의 어느 한쪽이 있는 것을 알았던 날 중에서 늦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원인을 기재한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해당 중재인에게 기피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피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을 해야 한다.<sup>43)</sup>

기피절차에 있어 중재인의 기피가 이유가 없다고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기피를 한 당사자는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았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대해 해당 중재인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중재인에게 기피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기피의 이유가 있다고 결정을 해야 한다.<sup>44)</sup> 중재판정부는 상기의 기피신청에 관계된

37) 한국 중재법 제14조 ①

38) 한국 중재법 제14조 ②

39) 한국 중재법 제14조 ③

40) 한국 중재법 제14조 ④

41) 일본 중재법 제19조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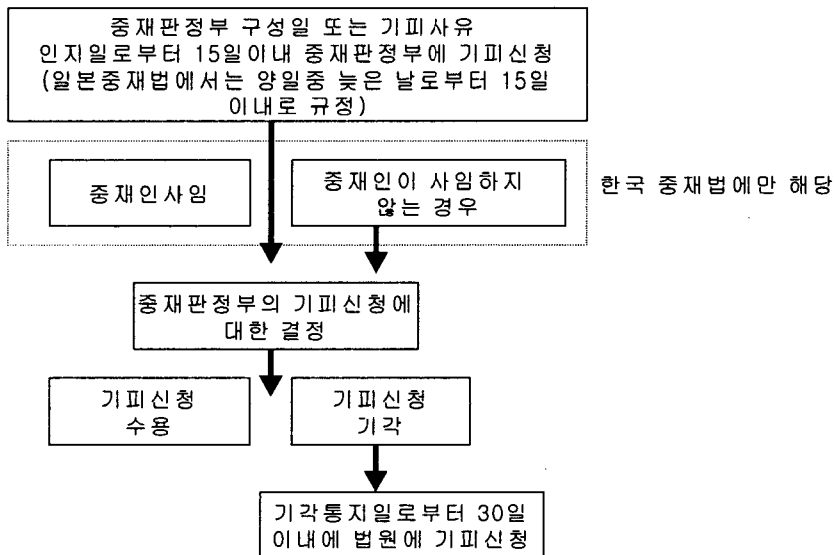
42) 일본 중재법 제19조 ②

43) 일본 중재법 제19조 ③

사건이 법원에 계류된 동안에 있더라도 중재절차를 개시하거나 속행하고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sup>45)</sup>

이상과 같이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과 일본 중재법상 중재인의 기피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합의되지 않은 경우의 중재인 기피절차



### 3. 중재인의 권한종료

한국의 중재법의 경우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인의 사임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의 권한<sup>46)</sup>은

44) 일본 중재법 제19조 ④

45) 일본 중재법 제19조 ⑤

종료된다.<sup>47)</sup> 상기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권한종료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sup>48)</sup> 이와 같은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sup>49)</sup> 즉, 중재인이 직무수행 불능에 처하거나 부당한 직무수행지연을 하는 경우 중재인 스스로 사임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중재인은 그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일본의 중재법의 경우 중재인의 임무는 ①중재인의 사망, ②중재인의 사임, ③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중재인의 해임, ④제19조 제1항으로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기피의 절차에 있어서의 기피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결정, ⑤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해임의 결정에 해당되는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중재인 기피절차 또는 중재인 해임절차의 진행 중에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중재인이 해임되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해당 중재인에 대해 기피나 해임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sup>50)</sup>

일본의 중재법에서는 한국의 중재법과는 달리 해임신청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당사자는 ①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①호의 경우 외에 중재인이 그 임무의 수행을 부당하게 지체시켰을 때의 사유가 있을 경우는 법원에 대해 중재인의 해임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중재인에게 그 신청에 관계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해당 중재인의 해임을 결정해야 한다.<sup>51)</sup>

46) 한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인의 권한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일본의 중재법에서는 중재인의 임무로 표현하고 있음.

47) 한국 중재법 제15조 ①

48) 한국 중재법 제15조 ②

49) 한국 중재법 제15조 ③

50) 일본 중재법 제21조 ②

51) 일본 중재법 제20조

#### 4. 보궐중재인<sup>52)</sup>의 선정

한국의 중재법상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는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3)</sup> 즉, 기존의 대체되는 중재인이 선정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중재인이 선정된다.

일본의 중재법상 중재인의 임무종료사유에 의해 중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후임 중재인의 선임의 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임무가 종료된 중재인의 선임에 적용된 선임의 방법에 의한다.<sup>54)</sup> 이는 한국 중재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후임중재인은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될 수도 있고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이전 중재인의 선임절차에 따라 선임된다.

#### 5.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관한 결정

한국 중재법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sup>55)</sup> 즉, 계약서 내에 있는 다른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중재조항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56)</sup>

52) 한국 중재법의 보궐중재인 용어는 일본 중재법상 후임 중재인에 해당되는 용어임.

53) 한국 중재법 제16조

54) 일본 중재법 제22조

55) 한국 중재법 제17조 ①

56) 이를 중재합의의 분리독립성이라고 하는데 “중재합의는 주계약에 부수적으로 체결되는 것이지만 그 효력은 주계약으로부터 분리되어 개별·독립적으로 판정되어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주계약의 성립에 하자가 있어도 중재합의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中村達也, 『國際商事仲裁入門』, 中央經濟社, 2001, p.21.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sup>57)</sup>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sup>58)</sup>

일본의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는 중재 합의의 존재여부 또는 효력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정 그 밖에 자기의 중재 권한의 유무에 관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sup>59)</sup> 중재합의에 관한 내용은 없다.

## 6. 한·일 양국의 중재판정부 구성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일반적으로 중재인이란 중재에 부탁된 분쟁을 자기의 책임으로 중재판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고 중재판정부(Abitral Tribunal)는 특정분쟁을 증거와 변론에 의해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인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재판정부의 핵심은 중재인이며 중재인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한·일 양국의 중재법상 이러한 중재판정부 관련 규정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중재인의 수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한국, 일본 양국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국은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은 3명이고 일본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가 없으면 3명으로 하고 당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중재인의 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57) 한국 중재법 제17조 ②

58) 한국 중재법 제17조 ③

59) 일본 중재법 제23조 ①



〈표 2〉 한·일 양국의 중재판정부 관련 규정의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중재인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합의에 따름</li> <li>· 합의가 없는 경우 3인으로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의 합의에 따름</li> <li>· 2명의 당사자가 합의없으면 중재인은 3명, 당사자의 수가 3명이상인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정함</li> </ul>
중재인의 선정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중재-선정요구후 30일이내에 합의못하는 경우 법원이 선정</li> <li>· 3인중재-선정요구후 30일이내, 2명의 중재인이 30일이내에 3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인 선정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2명이 중재인이 선임후 30일이내에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정</li> </ul>
중재인의 권한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수행불가, 직무수행지체의 경우 사임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권한종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인의 사망, 중재인의 사임, 당사자합의에 의한 중재인의 해임시 중재인의 임무종료</li> </ul>
보궐중재인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라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무가 종료된 중재인의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li> </ul>

중재인의 자격을 법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중재인은 법률에 의해서도 기피될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도 기피될 수 있다.<sup>60)</sup> 결론적으로 분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재인의 경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재인의 기피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의 기피절차에 따라서 해당 중재인을 배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

60) 김상호, “상사중재와 중재인-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인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1991, p.393.

고 이는 UNCITRAL 모델법에서도 동일하다.<sup>61)</sup>

양국 모두 원칙적으로 합의에 따라 중재인수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수나 선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UNCITRAL 모델법과 마찬가지로 국제상사중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인에 의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도록 하고 있는데<sup>62)</sup> 한국, 일본이 각각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히 일본의 경우 당사자의 수가 3명이상인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즉, 일본 중재법의 이러한 규정은 한국 중재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운영상에는 3인중재로 채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향후 일본 중재법의 개정시에 삭제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중재인의 권한종료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한 중재인의 해임신청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또한 한국 중재법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임신청사유가 한국 중재법의 중재인의 권한종료에 해당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법원에 해임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관련하여 그 내용을 약간씩 달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재합의와 관련된 준거법선정에서 각국의 중재법을 숙지하여 분쟁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1) 高桑 昭, 「UNCITRAL의 國際商事仲裁關に 規範法試案について」, 日本國際商事仲裁協會, 1991, p.393.

62) Clive M. Schmitthoff, *EXPORT TRADE*, Stevens & Sons, 1990, p.660.

## IV. 중재판정의 주요내용

### 1. 중재판정의 준거법

한국의 중재법상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sup>63)</sup>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sup>64)</sup>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평과 선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고<sup>65)</sup>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sup>66)</sup>

일본의 중재법상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에 있어 준거해야 할 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결정한 것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 한 나라의 법령이 정해진 때는 반대의 의사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결정은 저촉하는 내외 법령의 적용 관계를 정한 그 나라의 법령이 아니라 사안에 직접 적용되는 그 나라의 법령을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는 때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에 부쳐진 민사상의 분쟁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령으로 사안에 직접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적용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쌍방의 명시된 요구가 있는 때는 상기 규정에 관계없이 형평과 선에 의해 판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에 회부된 민사상의 분쟁에 관계된 계약이 있는 때는 이것에 정해진 것에 따라 판정하고 해당 민사상의

63) 한국 중재법 제29조 제1항

64) 한국 중재법 제29조 제2항

65) 한국 중재법 제29조 제3항

66) 한국 중재법 제29조 제4항

분쟁에 적용할 수 있는 관습이 있는 때는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sup>67)</sup>

한국 중재법과 같이 일본의 중재법에서도 형평과 선에 의한 판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습이 존재하는 경우 그 관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상관습은 어느 특정국가와도 관련되지 않은 국제적인 거래관행이므로 당사자의 공평에 적합하고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준거법으로 적용되곤 하는데 UNCITRAL 모델법에서도 거래에 적용되는 무역관행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68)</sup>

UNCITRAL 모델법과 같이<sup>69)</sup>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에서는 당사자들이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형평과 선에 따라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은 형평조항(equity clause)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형평조항은 중재인이 법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양당사자의 계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재인은 상식적인 견해를 취하여야 하고 법적 전문성에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70)</sup>

## 2. 중재판정의 형식과 효력

### (1)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한국의 중재법상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3인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지만 중재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주재하는 중재인이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sup>71)</sup> 즉, 의장중재인의 단독적인 판정권한은 개별적인 중재절차에 한정되며<sup>72)</sup> 분쟁당사자의 이해가 크게 대립되는 국제상거래에서는 양당

67) 일본 중재법 제36조

68) UNCITRAL 모델법 제33조 (3)

69) UNCITRAL 모델법 제28조 (3).

70) Clive M. Schmitthoff, *EXPORT TRADE*, Stevens & Sons, 1990, p.656.

71) 한국 중재법 제30조

사자나 중재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 수권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sup>73)</sup> 절차가 의장중재인 단독으로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재판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의장중재인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sup>74)</sup>

일본의 중재법상 합의체인 중재판정부는 중재인의 상호선출에 의해 중재판정부의 장이 되는 중재인을 선임해야 한다. 합의체인 중재판정부의 의사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동규정에 관계없이 중재절차에 있어서 절차상의 사항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다른 모든 중재인의 위임이 있는 때는 중재판정부의 장이 되는 중재인이 결정할 수 있다. 동 규정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sup>75)</sup>

절차상의 사항을 쌍방의 합의와 다른 중재인의 위임으로 의장중재인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중재법과 동일하다.

## (2) 화해중재판정 및 중재판정전 조정

한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절차의 진행중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른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 화해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sup>76)</sup> 화해내용을 기재한 중재판정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판정임이 명시되어야 한다.<sup>77)</sup> 화해중재판정은 당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sup>78)</sup>

일본의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

72) 이호원, "개정중재법에 관한 소고", 「중재」, 제302호, 대한상사중재원, 1999, p.14.

73) 민용규, "UNCITRAL Model Law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5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0, p.240.

74) 박상조·주기종·윤종진, 「國際商事仲裁法論」, 한울출판사, 1997, p.455.

75) 일본 중재법 제37조

76) 한국 중재법 제31조 제1항

77) 한국 중재법 제31조 제2항

78) 한국 중재법 제31조 제3항

절차에 부쳐진 민사상의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하고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때는 해당 화해에 의한 합의를 내용으로 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동 결정은 중재판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동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서를 작성하고, 이것에 중재판정의 표시를 해야 한다. 당사자 쌍방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 또는 그 선임한 1인 또는 2인 이상의 중재인은 중재절차에 회부된 민사상의 분쟁에 관하여 화해를 시도할 수 있다. 상기 승낙 또는 그 철회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sup>79)</sup>

한국의 중재법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중재법에서는 화해판정에 중재판정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재판정부나 중재인이 화해를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의 중재법에서와 같이 중재절차중에 합의된 조건으로의 판정 즉, 화해 중재판정을 진정 중재판정(genuine arbitral award)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 (3)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한국의 중재법상 중재판정<sup>80)</sup>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인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sup>81)</sup>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up>82)</sup> 중재판정에는 작성일자와 중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은 당해 일자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79) 일본 중재법 제38조

80) 한국의 중재법의 중재판정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중재법의 중재판정문에 해당됨.

81) 한국 중재법 제32조 제1항

82) 한국 중재법 제32조 제2항

본다.<sup>83)</sup> 작성·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보는 각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중재판정의 원본은 그 송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보관한다.<sup>84)</sup>

일본의 중재법상 중재판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하고, 여기에 중재판정을 한 중재인이 서명해야 한다. 단 중재판정부가 합의체인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의 과반수가 서명하고, 다른 중재인의 서명이 없는 이유를 기재하면 된다. 중재판정문에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재판정문에는 작성 연월일 및 중재지를 기재해야 하고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판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이 된 때는 중재인의 서명이 있는 중재판정문의 사본을 송부하는 방법에 의해 중재판정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sup>85)</sup>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가들의 중재법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문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중재판정의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재판정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합리적인 과정을 보증하고 중재의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중재판정문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 (4) 중재판정의 효력

한국의 중재법의 경우에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sup>86)</sup> 일본의 중재법상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sup>87)</sup>고 되어 있어 한국의 중재법과 동일하다. 이것은 중재판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내용으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

83) 한국 중재법 제32조 제3항

84) 한국 중재법 제32조 제4항

85) 일본 중재법 제39조

86) 한국 중재법 제35조

87) 일본 중재법 제45조

정판결과 동일하다고 하는 판결설에 입각한 내용이다. 즉,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이에 구속되는데 확정판결이란 형식적 확정력을 가진 판결로서 통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는 취소할 수 없는 판결을 의미한다.

### (5) 중재판정의 취소

한국의 중재법상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고 법원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sup>88)</sup>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sup>89)</sup> 당해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sup>90)</sup>

일반적으로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자가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는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거나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프랑스와 영국을 제외하고는 법원에 대한 상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중재판정의 구제 수단으로서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중재판정 취소의 소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서양속은 한 나라의 정치적 입장이나 국제적인 질서로서 정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의미하는데 중재판정이 중재지 국가의 공서양속의 개념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재합의의 무효 또는 비타당성, 중재절차상 적법절차위반, 중재판정부의 무권한·유월판정,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중재절차상의 하자, 중재부적합사항에 대한 판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이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된다.<sup>91)</sup>

88) 한국 중재법 제36조 제1항

89) 한국 중재법 제36조 제3항

90) 한국 중재법 제36조 제4항

91) 박상조·주기종·윤종진, 전거서, pp.462-466.



일본의 중재법의 경우 당사자는 <표 3>에서와 같이 취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원에 대하여 중재판정 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취소의 신청은 중재판정문 사본의 송부에 의한 통지가 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 결정이 확정된 때는 할 수 없다. 법원은 취소의 신청에 관계된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한 경우에 있어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해당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sup>92)</sup>

<표 3>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

구분		내 용
한국 중재법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그 준거법에 의하여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이었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li> <li>·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li> <li>·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부분만을 취소</li> <li>·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li> </ul>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때</li> <li>·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li> </ul>

92) 일본 중재법 제44조

구분	내 용
일본 중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합의가 당사자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그 효력을 갖지 않을 때</li> <li>· 중재합의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중재합의에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지정한 법령(해당 지정이 없는 때는 일본의 법령)에 의하면 당사자 능력의 부족 이외의 사유에 의해 그 효력을 갖지 않을 때</li> <li>· 신청인이 중재인의 선임절차 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일본의 법령(그 법령이 공공의 질서에 관계하지 않는 규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때는 해당 합의)에 의해 필요로 하는 통지를 받지 않았을 때</li> <li>· 신청인이 중재절차에 있어서 방어가 불가능 했었던 때</li> <li>· 중재판정이 중재 합의 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신청의 범위를 초과한 사항에 관한 판정을 포함한 것일 때</li> <li>·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일본의 법령(그 법령이 공공의 질서에 관련하지 않는 규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때는 해당 합의)에 위반했을 때</li> <li>· 중재절차에 있어서의 신청이 일본의 법령에 의하면 중재 합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분쟁에 관한 것일 때</li> <li>· 중재판정의 내용이 일본에 있어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 때</li> </ul>

### (6)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한국의 중재법에서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정<sup>93)</sup>·해석<sup>94)</sup> 또는 추가판정<sup>95)</sup>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데<sup>96)</sup>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sup>97)</sup> 중재판정부는 정정·해석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판정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3) 중재판정의 오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의 정정

94)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쟁점에 대한 해석

95)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판정.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한국 중재법 제34조 제1항

97) 한국 중재법 제34조 제2항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상기의 해석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sup>98)</sup>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sup>99)</sup>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정·해석이나 추가판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sup>100)</sup>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규정은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형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sup>101)</sup>

일본의 중재법상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중재판정에 있어서의 계산착오, 오기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과오를 정정할 수 있다. 동 신청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당사자는 동 신청을 할 때에는 미리 또는 동시에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정에 관한 규정은 중재판정정정의 결정 및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sup>102)</sup>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중재판정의 특정한 부분의 해석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동 신청은 당사자간에 관련된 신청을 할 수 있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sup>103)</sup>

당사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의 신청내용이 중재판정에서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해당 신청에 대한 중재판정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해야

98) 한국 중재법 제33조 제3항

99) 한국 중재법 제33조 제4항

100) 한국 중재법 제33조 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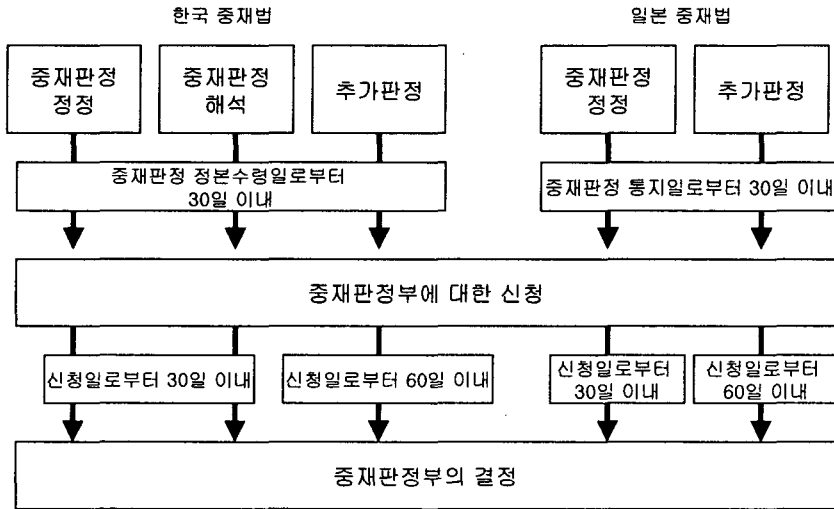
101) 한국 중재법 제33조 제6항

102) 일본 중재법 제41조

103) 일본 중재법 제42조

하다.<sup>104)</sup> 일본의 중재법에서도 한국의 중재법과 마찬가지로 추가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신청에 대한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 중재판정의 정정과 추가판정절차



여기서 추가판정이란 최종중재판정의 일종으로 중재판정부가 중재에 부탁된 분쟁의 전부에 대하여 판정할 의사로 판정하였으나 객관적으로 부탁된 분쟁사안에 대하여 판정을 유탈하였을 경우 추후에 중재절차를 재개하여 유탈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보충적 판정을 의미한다.<sup>105)</sup> 즉,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에서는 판정유탈된 분쟁사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4) 일본 중재법 제43조

105) 우성규, “UN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p.117.

### (7)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한국의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의하고<sup>106)</sup>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판정의 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한다.<sup>107)</sup>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동 협약에 의한다.<sup>108)</sup>

여기서 중재판정의 승인<sup>109)</sup>이란 중재판정이 기판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원이 승인하는 것이고 중재판정의 집행은 중재에서 패한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중재법상 국내중재판정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sup>110)</sup>을 받아야 한다.

일본의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중재지가 일본 국내에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해당 중재판정에 근거한 민사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집행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결정에 있어서 9가지의 예외규정<sup>111)</sup>을 두고 있다.<sup>112)</sup>

106) 한국 중재법 제37조 제1항

107) 한국 중재법 제37조 제3항

108) 한국 중재법 제37조 제4항

109) 한국 중재법의 중재판정

110) 한국의 중재법의 집행판결의 용어는 일본의 중재법상 집행결정의 용어에 해당됨.

111) ①중재 합의가 당사자의 능력 부족에 의해 그 효력을 갖지 않을 것, ②중재 합의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중재 합의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정한 법령(해당지정이 없는 때는 중재지가 속한 나라의 법령)에 의하면 당사자의 능력의 부족 이외의 사유에 의해 그 효력을 갖지 않을 것, ③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임 절차 또는 중재 절차에 있어서 중재지가 속한 나라의 법령의 규정(그 법령의 공공의 질서에 관계하지 않는 규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때는 해당 합의)에 의해 필요로 하는 통지를 받지 않았을 것, ④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있어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 ⑤중재판정이 중재합의 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신청의 범위를 초과한 사항에 관한 판정을 포함한 것일 것, ⑥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지가 속한 나라의 법령의 규정(그 법령의 공공의 질서에 관계하지 않는 규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때는 해당 합의)에 위반한 것이었을 것, ⑦중재지가 속한 나라(중재절차에 적용된 법령이 중재지가 속한 나라 이외의 나라의 법령인 경우에는 해당국)의 법령에 의하면 중재판정이 확정되지 않을 것, 또는 중재판정이 나라의 재판 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것, ⑧중재절차에 있어서 신청이 일본의 법령에 의하면 중재 합의의 대상으로 할 수

일본의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에 근거하여 민사 집행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채무자를 피 신청인으로서 법원에 대하여 집행 결정(중재판정에 근거한 민사 집행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말함)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45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재판기관에 대하여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그 효력의 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제1항의 신청에 관계된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동항의 신청을 한 자의 신청에 의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sup>113)</sup>

#### (8) 중재판정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한·일 중재판정 형식과 내용 관련 규정을 비교하면 <표 4>와 같은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과 관련하여 한국, 일본은 당사자가 지정한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형평과 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및 해당거래관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중재판정의 효력과 관련해서 한국, 일본 모두 확정판결과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한중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관련 규정의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가 지정한 법</li> <li>· 지정이 없는 경우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li> <li>· 형평과 선</li> <li>· 계약 및 해당거래의 상관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li> <li>·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령</li> <li>· 형평과 선</li> <li>· 계약 및 해당거래의 상관습</li> </ul>

없는 분쟁에 관한 것인 것, ⑨중재판정의 내용이 일본에 있어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 것

112) 일본 중재법 제45조

113) 일본 중재법 제46조

구 분	한 국	일 본
중재판정 부의 의사결정	· 중재판정부의 과반수의 결의	·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 인의 과반수
화해 및 조정	· 화해시 절차종료, 당사자의 요구로 화해내용을 중재판정 의 형식으로 기재, 중재판정 과 동일한 효력	·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하고 당사자의 신청시 화해합의내 용으로 결정, 중재판정으로서 의 효력
중재판정 의 형식	· 서면으로 작성, 중재인 전원 의 서명 · 일부중재인의 미서명시 다른 중재인의 이유기재 및 서명	· 중재판정문작성, 중재인의 서 명 · 합의체인 경우 과반수서명 및 다른 중재인의 미서명이 유 기재
중재판정 의 내용	· 중재판정이유, 작성일자, 중재 지	· 중재판정이유, 작성년월일 및 중재지

화해와 조정과 관련하여 각국 모두 화해규정을 두고 있고 중재인의 판정문 서명과 관련하여 중재인 전원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중재인의 미서명시 다른 중재인이 이유기재와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일본 중재법에서는 합의체인 경우 과반수 서명 및 다른 중재인의 미서명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의 중재법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일 양국의 중재판정의 효력과 승인·집행 관련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표 5>와 같다. 우선, 중재판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에서 당사자 증명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한국은 법원의 인정사유도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의 정정과 해석과 관련해서는 한국, 일본의 중재법에서는 판정문의 오류 등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판정문의 특정부분에

대한 해석과 신청내용이 판정에 누락된 것에 대한 추가판정을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과 관련하여 양국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해 법원의 승인이나 집행판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없다.

〈표 5〉 한·일 양국의 중재판정의 효력과 승인·집행 관련 규정의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중재판정의 효력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	· 당사자 증명사유 · 법원의 인정사유	· 당사자 증명사유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 중재판정正本 수취후 30일 이내에 정정, 해석, 추가판정을 신청 · 중재판정부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정정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재판정의 계산착오, 오기, 기타 유사한 과오를 정정 ·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특정부분의 해석을 신청 · 신청내용이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경우 추가 중재판정을 신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의하고 <sup>114)</sup> 대한민국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판정의 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	· 중재판정에 근거한 민사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집행 결정이 있어야 함

중재판정의 취소의 사유는 각국의 중재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었으나 뉴욕협약이나 UNCITRAL 모델법에 따라 통일화되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재합의 무효 또는 비타당성은 중재합의의 일

114) 한국 중재법 제37조 제1항



방당사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중재합의가 준거법이나 중재지법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재절차상 적법절차위반은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임이나 중재절차에 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기타 이유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경우이다. 중재판정부의 무권한·유월판정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합의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분쟁에 대하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중재절차상의 하자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 절차에 반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지는 경우이다. 중재부적합사항에 대한 판정은 당사자 자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한 판정이 내려진 경우이다. 이 경우 중재부적격사항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판정은 중재지 국가의 공서양속의 개념에 반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의해 한·일 양국의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의 규정유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에 대한 각국의 중재법상의 규정을 비교하면 한국, 일본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6> 중재판정의 취소의 사유 규정 유무에 대한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중재합의 무효 또는 비타당성	0	0
중재절차상 적법절차 위반	0	0
중재판정부의 무권한·유월판정	0	0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중재절차상의 하자	0	0
중재부적합사항에 대한 판정	0	0
공서양속에 반하는 판정	0	0

## V. 결론-양국 중재법의 통일화방안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상 중재판정부 구성과 중재판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동북아지역이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동북아지역내에서의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을 비교검토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 향후 동북아국가에서의 중재법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이 매우 유사한데 이는 국제상사중재제도에 국제적인 통일법을 제정한 UNCITRAL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UNCITRAL은 세계적인 통일성을 지닌 모델법을 제정하여 각국에서 이를 수용하도록 권장하여 왔고 한국, 일본도 이러한 취지를 수용하여 자국의 중재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양국의 중재법의 통일화가 진전되었다. 이러한 통일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에는 차이점도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상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중재합의시 준거법 선정 등에 유의하여 중재법 적용상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의 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이 UNCITRAL모델법을 근거로 하여 각국의 중재법이 일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면 동북아지역에서의 중재제도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양국의 중재법에 대한 통일화를 도모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동북아 각국의 중재기관들과의 교류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양국의 중재법의 통일화를 도모하기 위해 첫째, 한일중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일중재협의회의 구성은

한일양국의 중재기관의 관계자와 관련학회 관계자, 정부관련 당사자 등이 참가하여 정기적인 만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일중재협회의가 가동됨으로써 양국의 중재법 개정과 통일화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둘째, UNCITRAL모델법을 기준으로 양국의 조문별 차이점을 분석하여 통일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UNCITRAL모델법을 기준으로 조문별 차이분석을 통하여 법적용상의 어떠한 효력과 문제점 등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차이가 있는 법조문의 내용과 그 효력 등을 법률가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개정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일양국의 중재법 통일화를 위한 노력을 동북아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중재협의회를 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북아 중재협의회내에서 한일중재협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 국가들의 중재법 통일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넷째, 양국의 중재법의 통일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향후 활성화될 온라인중재에 대한 규칙의 제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즉, 온라인중재가 보편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중재관련 규칙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함으로써 통일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길경준, “한국의 중재제도 현황”,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3.
- 김대현, “우리나라 중재법, UNCITRAL표준중재법 및 주요선진국 중재법의 비교”, 『무역상무연구』, 제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4.
- 김상호, “ADR제도를 통한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방안” 『국제상학』, 제

- 19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12.
- 김상호, “상사중재와 중재인-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인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1991.
- 민용규, “UNCITRAL Model Law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5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0.
- 박상조·주기중·윤종진, 「國際商事仲裁法論」, 한울출판사, 1997.
- 성백영,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내용과 문제점 고찰-섭외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제18회 정례학술발표회논문집」, 한중법학회, 1998.3.26.
- 신군재·김경배, “중국의 ADR제도와 국제중재판정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3.
- 양병희, “한국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중재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3.
- 우성구, “우리나라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적용상의 쟁점” 「국제상학」, 제14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11.
- 우성구, “UN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윤진기, “중국 중재법”, 「기업법연구」, 제12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3.
- 이주원, “CIETAC 중재의 중재절차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6.
- 이호원, “개정중재법에 관한 소고”, 「중재」, 제302호, 대한상사중재원, 1999.
- 이호원, “한국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3.
- 장문철, “동북아국가들과 캐나다의 상사중재법의 상이점”, 「캐나다연구」, 제2집,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0.
- 조대연, “한국중재법의 현황과 과제”, 「중재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3.

- 최석범, “중국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12.
- 최석범, “동북아국가들의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비교법적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2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8.30.
- 최석범·이용근, “동북아 각국의 중재판정부 구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상학」, 제20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6.
- 최장호, “한국과 대만의 중재법 개정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14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11.
- 홍성규·김종락, “개정한국중재법의 주요논점과 과제”, 「국제상학」, 제18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6.
- 홍창기, “국제상사중재제도에 있어서 중재판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무역학회지」, 제28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3.6.
- 高桑 昭, 「UNCITRALの國際商事仲裁關に規範法試案について」, 日本國際商事仲裁協會, 1991, p.393.
- 渡辺惺之, 日本における仲裁法の現状と課題”,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3.
- 木棚照一, “日本における外國仲裁判斷の承認と執行”,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
- Domke, Martin, *Domke on Commercial Arbitration: The Law and Practice of Commercial Arbitration*, Callaghan & Company, 1984
- Lee, Eric,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in China*, Lloyd's of London Press, 1985.
- Schmitthoff, Clive M., *EXPORT TRADE*. Stevens & Sons. 1990.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Arbitral Award under the Arbitral Laws between Korea and Japan

Seok-Beom Choi

Jae-Woo Jung

Tae-Hwan Kim

The parties in the trade can have full autonomy and can resolve disputes independently, impartially and without delay by selecting arbitration by agreement.

Korea and Japan had revised their Arbitration Laws to incorporate as many provisions of the 1985 UNCITRAL Model Law as possible.

Japan had amended its century-old arbitration law, becoming the 45th country to adopt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New Arbitration Law was enacted as Law No.138 of 2003 and effective on March 1, 2004, is applicable to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Korea had amended its arbitration law on December 31, 1999 and its New Arbitration Law incorporates the most of the 1985 UNCITRAL Model Law as Japan.

Arbitration must be popular in re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in Northeast Asian bloc in order to increase the volume of intra-trade in the Northeast Asian bloc. But in order for the parties to make use of arbitration in the bloc, the arbitration laws of nations in the bloc must have similarity and unification. As Korea and Japan plays important

roles in the bloc, both nations's arbitration laws must be studied in view of similarity and difference to unify both nations' arbitration laws by way of showing an example.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both nations' arbitration laws in view of comparative law to unify their arbitration laws and Northeast Asian Nations' arbitration laws.

**Key Words** : Arbitration, Arbitration Law, Arbitral Award, Comparative Law, Korea and Japan